▪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 <개정 2024. 4. 29.>

사망보상금 청구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30일

청구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
	자택 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[] 예 [] 아니요
	주소		
	급여 수령 금융회사명		계좌번호
사망한 군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
	사망연월일		청구인과의 관계
	사망 당시 계급·호봉		군번
	사망보상금 지급 구분 [] 전사 [] 특수직무순직 [] 공무상 사망		
	제3자 가해사실 [] 있음 [] 없음		외국파견 기간 중 사망 여부 [] 외국근무 중 [] 국내근무 중
	소속 부대		
	복무구분 [] 병역의무 [] 직업군인		
	급여 제한 사유 [] 금고 이상의 형 확정 []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수령 []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 수령		

「군인 재해보상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국 군 재 정 관 리 단 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청구인 첨부서류	1. 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. 가족관계증명서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주민등록표 등본 *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. 이 경우 신청인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마친 사람이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서 사본의 제출로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.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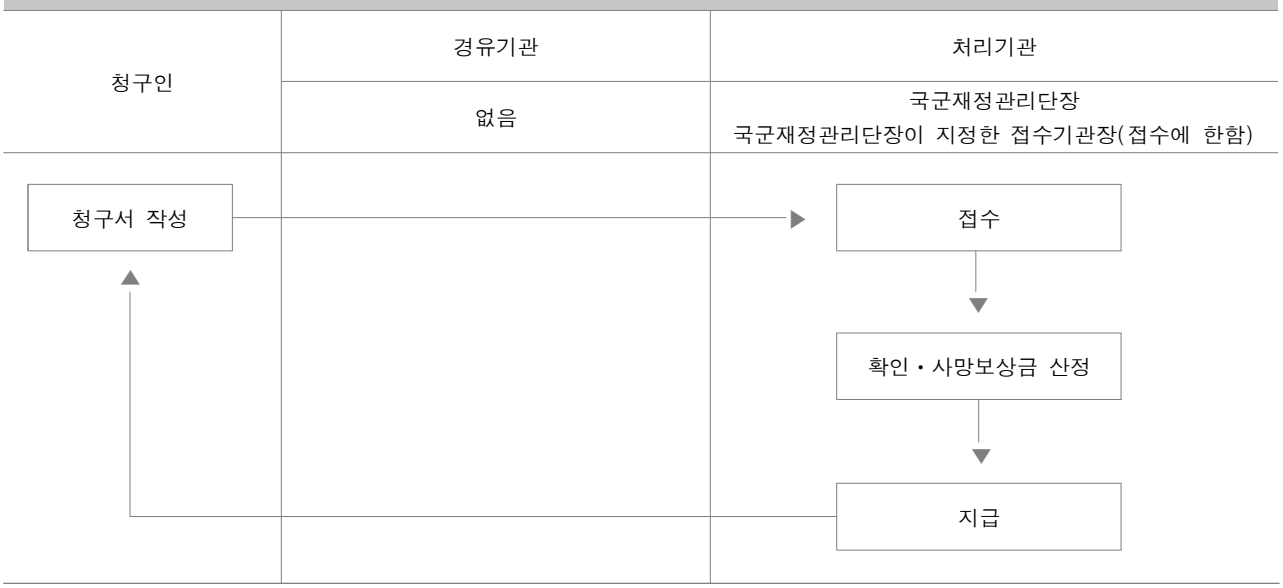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1.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(실제 거주하는 주소)를 적으십시오.
2.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.
3.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실명확인통장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.
4. 사망한 군인의 급여 제한 사유란에는 해당하는 [] 안에 "√" 표시를 하십시오.

※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,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.

처리절차

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